

부산광역시사하구 자연재난에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. 2. 9 ----- 사하구청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6. 2. 10
- 다. 상 정 일 자 : 2006. 2. 20 (제135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상정,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재난안전과장 양종호)

가. 제안이유

각종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이 일부 개정, 시행 [2005. 1. 27 법률 제7359호로 공포] 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대책업무에 대한 대응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목적(안 제1조)
 -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
- 위원회의 기능(안 제3조)
 -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여부에 관한 사항 심의
- 위원회의 구성(안 제4조)
 -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 - 위원장은 부구청장, 부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
 - 위원은 재난방재관련 전문가 및 민간단체 임원 또는 자연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 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하는 자와 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
 -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재난관련업무 주무 담당이 된다
- 위원의 임기(안 제5조)
 -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 재직기간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해 연임 가능
 -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

- 위원회의 회의(안 제7조)
 - 회의는 자연재난 피해원인 종료 후 7일 이내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
 -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
- 의견의 청취(안 제8조)
 - 위원회는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원인, 피해당시 기상특보내용, 경찰관서 등의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 등을 참고하고, 필요시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 청취

3. 검토의견

- 본 조례제정 건은 지난 2005년 1월 27일부로 일부 개정된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이 법률 제7359호에 의거 공포됨에 따라 각종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를 보다 정확하고 실효성있게 통계관리하고 예측함으로써 행정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기하고
- 인명의 피해정도를 완벽하게 식별 관리하여 왜곡된 언론 보도로 인한 혼선방지와 피해자 관리·복구계획수립 등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의 최소화와 예산절감 사회안전망구축에 크게 기여 한다고 판단됨
- 그리고, 부산진구 등 13개구에서 조례가 제정완료 내지 입법예고 중에 있고, 남구·동구에서는 조례심의 중에 있음
- 특히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등 상위법령에 조례제정에 관한 위임규정이 없지만 2004. 7. 26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리지침을 비롯하여 2005. 6. 26자 부산광역시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등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위임조항이 명시되어 있고
-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,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입법이 가능하므로 위 조례제정 건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